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07.1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06.1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9.06.16.

다. 상정일자 : 제146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위원회(2009.07.0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손 문 수 교통지도과장

가. 제안이유

구 행정기구의 개편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07. 02. 15 규칙 제464호)됨에 따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던 운수관리팀의 소속이 교통행정과
에서 교통지도과로 변경되었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위원회 부위원장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

운수관리팀 소속부서 변경에 따라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개정.

나.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

3. 검토보고 (신승관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구 행정기구의 개편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2007. 2. 15일 규칙 제464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던 운수관리팀의 소속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변경되었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